



캘리포니아의 개인정보보호법과 보험산업

손민숙 연구원

영향

2020년 7월 1일 캘리포니아의 개인정보보호법(CCPA) 최종 규정이 공포될 예정임. CCPA는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위반 시 제재가 있으며, 소비자는 옵트아웃을 포함한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가짐. 보험회사는 각종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CCPA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집단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 Mayer Brown(2019)은 보험회사가 CCPA 대비를 위한 절차 및 대응 계획을 검토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함

■ 캘리포니아의 개인정보보호법(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이하, 'CCPA')¹⁾은 2018년 9월 23일 개정안이 통과되고, 2020년 1월 1일 효력이 발생하며, 2020년 7월 1일 최종 규정이 공포될 예정임²⁾

- 미국은 영역별·분야별 규율 방식을 채택하여 공공·민간부문을 아우르는 종합적·포괄적 입법이 없음³⁾
- 연방의 대표적인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로 1974년 프라이버시법이 있음
- 그 외 관련 법, 제도 정책으로 1973년 보건복지부의 '정보처리의 공정성의 원칙' 및 2012년 프라이버시 소비자 권리장전, 2016년 연방통신위원회의 인터넷서비스사업 프라이버시 규칙 등이 있음

■ CCPA는 캘리포니아의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위반 시 제재가 있으며, 소비자는 옵트아웃⁴⁾을 포함한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가짐⁵⁾

- 보호 주체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일반 사람으로서, 임시 또는 일시적 목적으로 주에 체류하는 것 외에

1) Assembly Bill No. 375
 2) Insurance Journal(2019. 7. 1), "California's new data privacy law coming"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17. 12),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연구"
 4) 옵트아웃(Opt-Out)은 제3자에 대한 개인 정보 판매 거부권이며, 정보 소유 당사자가 정보 수집을 명시적으로 거부할 때에만 정보 수집을 중단하는 블랙리스트 방식임. 반면, 옵트인(Opt-In)은 당사자가 정보 수집에 명시적으로 동의할 때에만 정보 수집이 가능한 화이트리스트 방식임
 5)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the California Attorney General,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CCPA) / Public Forum Materials

거주하는 개인, 임시 또는 일시적으로 주 밖에 있는 개인임

- 법 적용 대상 기업은 연간 매출이 총 2,500만 달러를 초과하거나, 50,000명 이상의 소비자 개인 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구매·판매·공유하거나, 소비자 개인 정보 판매로 연간 매출의 50% 이상을 달성하는 기업임
- 소비자는 회사가 수집하는 개인 정보 및 출처, 사용 대상, 판매 대상 등에 대한 알 권리 및 옵트아웃, 개인정보삭제권, CCPA 권리 행사 시 차별금지권⁶⁾을 가짐
- 법 위반 시 기업은 1인당 750달러 또는 실제 손해액 중 더 큰 금액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으며, 사건당 2,500달러 또는 고의적인 위반의 경우 최대 7,500달러까지 벌금 부과가 가능함

■ 보험회사는 각종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CCPA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집단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

- CCPA의 예외로는 의료정보 비밀 보장법(CMIA: Confidentiality of Medical Information Act)과 의료보험의 양도 및 책임에 관한 법률(HIPAA: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에 따른 건강·의료 정보⁷⁾ 등이 있음⁸⁾
 - 위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CCPA의 적용을 받으며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음
- 특히 AB 981(의회법안 981)에 따르면 CCPA의 여러 의무 조항에서 ‘보험기관, 대리인, 보험회사’를 면제하며, 보험회사는 소비자의 이익을 위한 보험거래를 완료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의 보유 및 공유가 필요한 경우 소비자의 개인정보삭제권을 거부할 수 있음
- 또한 AB 981은 캘리포니아 보험 정보 및 개인정보보호법(IIPPA: California’s Insurance Information and Privacy Protection Act)개정을 통해 CCPA와의 법적 통일성을 갖추고자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 대한 집단소송의 가능성이 있으며, 집단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보험회사들에게 대규모 영향이 예상됨

■ Mayer Brown(2019)은 보험회사가 CCPA의 ‘개인정보’ 정의에 따라 데이터를 분류하고,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업데이트하며, 옵트인/옵트아웃을 위한 절차뿐만 아니라 사고 대응 계획을 검토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함⁹⁾ **kiri**

6) 다른 가격을 부가하거나 다른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권리 자체를 거부할 수 없음

7) Cal. Civ. Code §1798.145(c)

8) 그 외에도 금융서비스현대화법(그램 리치 블라일리 법, GLBA, Gramm-Leach-Bliley Act)과 캘리포니아 금융 정보 보호법(California Financial Information Privacy Act)의 지배를 받는 개인정보(Cal. Civ. Code §1798.145(e)), 운전자 개인정보보호법(DPPA, Driver’s Privacy Protection Act, Cal. Civ. Code §1798.145(f))이 있음

9) Mayer Brown(2019. 5. 1), “The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Key Takeaways for Insurers and Insurance Regulators”